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박배근 교수 (부산대학교)
 편집위원 김성원 교수 (한양대학교)
 이기범 교수 (연세대학교)
 오선영 교수 (숭실대학교)
 김현정 교수 (연세대학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 Others v Switzerland* 판결 : 인권에 기반한 기후소송의 진화

경희대학교 백범석 교수



사진 출처: <https://www.economist.com/britain/2024/04/25/the-ecthrs-swiss-climate-ruling-overreach-or-appropriate>

1. 기후소송의 최근 경향과 특징

지난 4월 유럽인권재판소는 3건의 기후소송에 대해 판결하였다.¹ 이번 판결들은 기후소송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KlimaSeniorinnen 사건은 국내적 차원을 넘어 지역인권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로 향후 기후소송 접근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기후소송²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동인이자 현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³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채택과 함께 국내법적 차원에서 최초로 정부의 기후변

화 대응 책임 및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를 인정한 Urgenda 사건(2019)⁴ 이후 기후소송은 범세계적으로 증가해 왔다.⁵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2024년 4월까지 제기된 기후소송은 미국에서만 2,251건, 여타 다른 국가에서는 917건으로 총 3,168건에 달한다.⁶ 국제법적으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최근 발표한 바 있고,⁷ 이와 유사한 기후변화와 법적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이 미주 인권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황이다. 그 외 인권조약기구에 제기된 개인통보사건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에 제기된 일련의 결정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⁸

기후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인권에 기반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권을 보호 및 보장해야 할 구체적인 인권으로 보고 이에 기반하여,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및 기업⁹의 작위(예: 기후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또는 부작위(예: 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 약속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미래세대의 권리 또는 아동의 권리와 세대 간 정의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일반논평 36호를 채택하면서 환경보호와 생명권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¹⁰ 2022년 유엔 총회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을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적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¹¹

결국 인권에 기반한 기후소송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응(입법, 정책수립 및 이행)에 대해 과연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감소 정도에 대한 의사결정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관으로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정한 탄소감축 목표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인권침해 문제와 동일한 구조로 법원의 사법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법원이 실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인과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소송은 대부분 이러한 구도를 취해 왔다.

II. '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지난 4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가 판결한 3건의 기후소송은 다음과 같다. 먼저 KlimaSeniorinnen

사건은 스위스 내 64세 이상 여성 2,400여명(평균연령 73세)으로 이뤄진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단체 KlimaSeniorinnen Schweiz와 여성 노인 4명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청구인들은 지구 온난화가 여성노인의 건강권과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스위스 정부의 미흡한 기후대응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17명의 재판관 중 16인 찬성으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기후변화가 생명, 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Duarte 사건은 포르투갈 청소년 및 어린이 6명이 미래세대가 산불, 재난 등 더욱 심각한 기후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자국 포함 33개국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적국인 포르투갈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한 소제기는 유럽인권협약상 관할권을 확장(역외)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국내구제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마지막으로 Carme 사건은 프랑스 정부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생명권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Grande-Synthe 지방의 전 시장이 2021년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2019년 5월 브뤼셀로 이사하면서 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현재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공공기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기구의 경우 협약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Grande-Synthe 지방 전 시장으로서의 소제기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들은 기후소송이 가지는 특징과 함께,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Carme 및 Duarte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설사 긴급한 기후위기로부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사법적 개입을 요청하는 기후소송일지라도, 관할권, 피해자 지위, 국내구제절차의 완료와 같은 통상적인 당사자적격 요건은 무시되거나 확대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음으로 KlimaSeniorinnen 사건에서 재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을 존중할 권리)와 제6조 제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지역인권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해당 사건은 기후소송이 가지는 특징과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에 향후 각국의 국내법원을 통한 기후소송 접근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자국 내 기후대응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KlimaSeniorinnen 판결에 대해 상세히 살펴 본다.

III.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사건

1) 소송배경

청구인들은 스위스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사망자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고 그 중 고령 여성 사망자가 남성에 비해 63% 이상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16년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¹² 스위스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에 의해 설정된 1.5C 목표와 구속력 있는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¹³ 그러나 법원은 고령 여성만 유독 기후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이후 2020년 5월 같은 취지의 스위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자 청구인들은 다음의 3가지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이유로 11월 26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즉 스위스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협약 제2조 및 제8조에 반하며, 스위스 법원이 자의적 이유로 사건을 각하함으로써 협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제13조(구제 받을 권리)를 각각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당사자적격

우선 개인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스위스 국적 고령 여성 4인의 경우 재판소는 당사자적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판결문 487-488항). 유럽인권협약은 협약 제34조14에 따른 피해자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제소할 수 있으며 그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해당 개별 청구인의 경우 스위스 정부의 조치 또는 부작위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악영향이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판결문 533항).¹⁵ 노인이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은 분명하나 그 자체만으로 개별 청구인에게 피해자 지위를 부여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본 것이다(판결문 530-531항).

이에 반해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단체 ‘KlimaSeniorinnen Schweiz’의 경우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 스위스 내 적법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구성 및 대표성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직접적 악영향을 받는 고령 여성들을 대신하여 협약상 보호되는 이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판결문 521-526항). 유럽인권협약은 공익소송(Actio Popularis)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체 내 회원의 권리가 위태로

울 수 있더라도 피해자 지위를 바로 인정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판소는 기후변화가 가지는 복잡성과 긴급성 및 결과의 심각성 등을 특별히 고려할 때, 기후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특정 피해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가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판결문 476, 489-499항).¹⁶ 이 번 판결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의 경우 피해자 지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기후소송의 경우 단체가 기후위기에 따른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을 대표할 수 있다면 자신이나 구성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후소송의 경우 개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미 비정부기구(이하 NGO)는 오랜 시간 인권소송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권에 기반한 기후소송에서도 이들의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본안판결

유럽인권재판소는 26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조치는 유럽인권협약상의 의무와 양립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첫째, IPCC 보고서를 인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인해 노령 여성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과학적 증거를 인정하면서,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향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각 국은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여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¹⁷ 현재의 완화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했지만, 미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량화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감축계획을 세우지 않고 과

거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협약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판결문 558~559항). 물론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은 기후변화와 그 악영향에 대처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가의 약속에 의해 제한된다(판결문 543항). 각 국은 최소한 자신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판결문 420 및 546항). 이에 재판소는 협약 제8조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완화 조치를 제시하였다(판결문 550항). 다만 스위스 정부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정하지는 않았고 이를 스위스 당국 및 국내 법원이 직접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둘째, 스위스 법원이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부하고 각하한 것은 협약 제6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오르후스(Aarhus)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판결문 602항)¹⁸, 기후소송에서 국내 법원은 기후변화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침해 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판결문 614항). 셋째, 국가의 부작위 내지 부적절한 조치에 따른 기후위기와 인권침해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기후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국내 당국이 취하지 않은 합리적인 조치가 결과를 바꾸거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reasonable measures which the domestic authorities failed to take could have had a real prospect of altering the outcome or mitigating the harm) 협약 위반에 따른 국가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판결문 444항).

IV. 마치며

KlimaSeniorinnen 판결은 스위스를 제외한 타국

국내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은 향후 다른 기후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소송에서 국제인권법의 역할을 공고히 했으며, NGO의 활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최근 제기된 기후소송에서 미래세대의 권리와 같은 현 국제인권법 체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다소 자극적인 담론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는 기후위기와 인권침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이번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미래세대의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국가가 저야 하는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기후변화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향유를 위한 “국가의 주된 의무는 기후변화의 현재 및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미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와 조치를 채택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 (판결문 545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인권에 기반한 기후소송과 법적 의무로서 기후대응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또한 취약한 권리주체에 의한 소송에 있어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지위를 검토하면서 당사자적격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그것이 법적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선택의 문제인지 때때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가 자국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재량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적어도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국가의 국가정책 관련 사안은 단순히 정치 또는 정책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각 국가에 부여되

는 재량의 여지는 무제한이 아니고 적어도 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이를 심사할 법원의 권한은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기될 인권에 기반한 기후소송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사안을 다룰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

1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Application no. 53600/20 (ECtHR, communicated case), KlimaSeniorinnen 사건; *Duarte Agostinho and Others v Portugal and 32 Other States* Application no. 39371/20 (ECtHR, communicated case), 이하 Duarte 사건; *Carme v France* Application no. 7189/21 (ECtHR, communicated case), 이하 Carme 사건.

2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소송이 주로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기후대응정책의 구체적 실천적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원인의 주제공자인 기업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3 UN Environment Programme(이하 UNEP),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2023)

4 2015년 6월 1심 및 2018년 10월 항소심을 거쳐 2019년 12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2조(인간 존엄 존중의 원칙) 및 제8조(사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인용하면서 2020년까지 네덜란드 정부가 1990년 배출량의 25%를 감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Dutch Supreme Court (Hoge Raad), *Urgenda Foundation v. the Netherlands*, Judgment of 20 December 2019, No. 19/00135, (ECLI:NL:HR:2019:2006).

5 UNEP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까지 2,180건의 기후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2017년 884건, 2020년 1,550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6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Sabin 기후변화법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을 모니터링하여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https://climatecasechart.com/>

7 지난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는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에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을 보호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특히 당사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해양 보호가 곧 기후 보호이며 이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가 있음을 재판소는 분명히 명시하였다.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Press Release “Tribunal Delivers unanimous Advisory Opinion in Case No.31 requested to the Tribunal by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ITLOS/Press 350, 21 May 2024.

8 *Billy v. Australia*, UN Doc. CCPR/C/135/d/3624/20 19 (2022); *Sacchi v. Argentina and others*, UN Doc. CRC/C/88/d/104/2019 (2021); *Teitiota v. New Zealand*

⋮ 필자 소개 ⋮

백법석 교수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법 협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 UN Doc. CCPR/C/127/d/2728/2016 (2020)) 등 참조.

9 특히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 환경 공급망실사법을 점차 도입되면서 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소송도 증가추세에 있다.

10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36, para.62 UN Doc. CCPR/C/GC/36 (2019).

11 UN GA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UN Doc. A/RES/76/300 (2022). 2024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UN Doc. A/HRC/RES/55/2 (2024).

12 유럽인권재판소도 판결문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특별보고서를 인용하며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였다. 즉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열 관련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고령 여성의 사망률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75세 이상 여성은 일반 인구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도한 폭염으로 조기 사망 및 심각한 삶의 장애 위험이 더 크다고 보았다(판결문 67, 74항 등 참조).

13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스위스가 2022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였으나 해당 법률은 2031년 이후 적용되며, 탄소배출량 목표치만 규정하고 달성방안에 대해서는 연방기후변화위원회가 적절한 시기에 의회에 제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량화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14 유럽인권협약 제34조(개별적 제소) 재판소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체약국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정부조직,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체약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15 같은 맥락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제6조 및 제8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본 사건을 심리하였다.

16 특히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소하기 위한 단체(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대 사회에는 진화하고 있다“(there has been an evolution in contemporary society as regard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ssociations to litigate issues of climate change on behalf of affected persons)며 “기후소송은 종종 복잡한 법과 사실의 문제를 포함하며 상당한 금전적, 물적 지원이 요구되며 필연적으로 많은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판결문 497항).

17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현저하고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하였다.

18 해당 협약(Aarhus Convention)은 1998년 유엔 유럽경제

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이하 UNECE)에서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원명칭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 환경행정절차참여권, 환경사법익세스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Access to Justice)이다. 제9조는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결정에 관한 심사절차를 다루는데, 당사국은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로 인해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인이 법원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 ·공평한 기관의 심사절차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